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852호
- 나. 발 의 자 : 이병도 의원(찬성자 20명)
- 다. 발 의 일 : 2023년 5월 30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도모함

3. 주요내용

- 가. 진흥계획 수립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 개정(2023.3.21.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 ④ (생략) ⑤ 시장, <u>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구청장</u> ----- ----- ----- -----

나. 검토 내용

-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은 개정(2023.3.21.시행) 전, 국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 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었으나,

- 시·도와 시·군·구 간 상호계획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는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음
- 개정된 현행 「공공디자인법」은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기존의 광역과 기초단체간 계획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칭하던 “지역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계획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도지사는 “광역계획”의 수립 시 미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공공디자인법」 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계획수립주체	개정 전	개정안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종합계획”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종합계획”
시·도지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지역계획”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광역계획”
시·군·구청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지역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6항1)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레이므로 상위법 개정(2023.3.21.시행)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진흥계획 수립 시 자치구청장 의견 청취 및 협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1항에서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위법 개정 전 시·도지사 및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을, 개정 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는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3. 21.>

바, 상위법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합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